

이 회보는 공문과 동일하므로 신속 정확히 처리



## 남하면 회보

제2022 - 43호  
2022. 11. 2.(수)

본 회보는 일반 공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각종 행정 지시사항을 종합 시달함으로 공문서 감축과 소비절약 및 행정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 전 이장은 마을 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람

반 장	반 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이 장

  
([www.namha.go.kr](http://www.namha.go.kr))

### 남하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                      |                    |
|----------------------|--------------------|
| - 남 하 면 장 : 940-7700 | - 총무담당 : 940-7710  |
| - 행복복지담당 : 940-7720  | - 개발담당 : 940-7730  |
| - 경제산업담당 : 940-7740  | - F A X : 940-7709 |

이장회의 시간(오전 11:00,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 회의일 : 첫째, 셋째주 수요일 ☆

☆ 등청일 : 둘째, 넷째주 수요일 ☆

## 〈차 례〉

### □ 총무담당

1. 남하면 연중 동향보고 안내 .....	1
2. 제1기 남하면 파크골프 기초강습반 수강생 모집 .....	1
3. 대국민 절주교육 운영 안내 .....	1
4.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안내 .....	2
5.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2
6. 제15회 거창사건사업소 추모공원 국화관람회 개최 안내 .....	3
7.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 안내 .....	3

### □ 행복복지담당

1. 12월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사업 신청 안내 .....	4
2.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신청 .....	4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변경 안내 .....	4
4. 「행복이 남하도는 냉장고」 공유냉장고 운영 .....	5
5.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협조 .....	5

### □ 개발담당

1. 생활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단속 및 홍보 협조 요청 .....	6
2. 폐자원 보상교환 변경안내 홍보 협조 요청 .....	6
3.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홍보 .....	6
4. “우리 동네 눈치우기” 학생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및 협조 요청 .....	7
5. 영농폐기물(환경공단 수거불가 품목 등) 수거안내 .....	7
6. 빈집정비 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해제 절차 홍보 .....	7
7.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	8
8. 도로조명시설(가로등) 신설 및 이설 요청 시 유의 사항 안내 .....	8
9. 2022년 거창군민 안전 보험 안내 .....	9

### □ 경제산업담당

1. 2022년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일정 안내 .....	14
2. 2022년 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발생 조사(4차) 안내 .....	14
3.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신청 안내 .....	15
4.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임시휴관 안내 .....	15
5. 2023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	15
6. 2023년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	16
7. 2022년 추기 및 2023년 춘기 산불방지 예방 안내 .....	16
8. 가을철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안내 .....	16
9. 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17
10. 11월 농업기계 현장순회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 일정 알림 .....	17
11. 2022년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신청 .....	18
12. 2023년도 조림 신청·접수 안내 .....	18
13.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금 신청 안내 .....	19
14. 2022년 하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 알림 .....	19
15. 「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알림 .....	20
16. AI 특별방역대책기간(2022)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알림 ...	20
17.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명령 공고 알림 .....	21
18. 제8기 경남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모집계획 안내 .....	21
19.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홍보 협조 .....	21

# 총무담당

## 1. 남하면 연중 동향보고 안내

[담당 : 이유라 940-7711]

행사·미담·수범사례·사건사고 등 마을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발생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주민여론 등 민심에 관한 사항 / 주요인사 등 내방
  - 마을, 단체 등 행사 / 사건·사고
- 시 기 : 수시(발생 즉시)
- 방 법 : 남하면 총무담당 연락(☎055-940-7710)

## 2. 제1기 남하면 파크골프 기초강습반 수강생 모집

[담당 : 이보배 940-7712]

제1기 남하면 파크골프 기초반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2. 10. 24.(월) ~ 11. 11.(금)
- 모집인원 : 20명 내외
- 주요내용 : 파크골프 기본자세 등 강의
- 문의 및 접수 : 남하면 총무담당(055-940-7714)

## 3. 대국민 절주교육 운영 안내

[담당 : 김태현 940-7714]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건강생활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절주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연중
- 대 상 : 대국민(일반성인, 아동, 청소년, 근로자, 군인, 보건·복지시설 이용자 등)
- 교육내용 : 술(알코올)의 이해, 음주폐해, 절주실천수칙 등
- 교육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 (기관 직접 교육 운영) 교육 영상, 교안용 PPT 등 교육콘텐츠 제공
  - (교육 강사 연계) 대면 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 문 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팀(☎02-3781-2259, 3782-7685)

#### 4.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안내 (담당 : 은누리 940-7713)

지난 8월 31일 거창군과 거창군이장자율협의회에서 군민의 힘으로 6만명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 인구 늘리기 민·관 공동대응 실천협약을 체결하여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께서는 남하면의 인구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22. 9. ~ 12.
- 추진목표 : 45명 전입(마을별 2명 +  $\alpha$ )
- 마을별 목표인구

마을명	현재인구 (2022 & 22)	목표인구	증가인원	마을명	현재인구	목표인구	증가인원
<b>총계</b>	<b>1,405</b>	<b>1,450</b>	<b>45</b>				
대촌	77	79	2	산포	74	76	2
신촌	82	84	2	대야	83	85	2
안흥	131	134	3	오가	19	21	2
아주	72	74	2	용동	21	23	2
내곡	47	49	2	가천	61	63	2
상촌	94	97	3	자하	88	91	3
대곡	84	87	3	신기	64	66	2
양곡	70	72	2	장전	29	31	2
무릉	182	185	3	천동	49	51	2
월곡	55	57	2	대사	23	25	2

#### 5.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담당 : 김태현 940-7714)

2022년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시 일 : 2022. 10. 31.
- 이의신청기간 : 2022. 10. 31. ~ 11. 30.
- 대 상 : 2022. 1. 1.부터 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
- 접 수 처 : 군청 재무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6. 제15회 거창사건사업소 추모공원 국화관람회 개최 안내

(담당 : 김태현 940-7714)

거창사건사업소 추모공원에서 제15회 국화관람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2. 10. 29.(토) ~ 11. 11.(금) 【14일간】
- 장 소 : 거창사건추모공원 일원
- 전시규모 : 국화 150여종, 25만여본
- 주 제 : <국화향 가득한 추모공원, 새로운 희망의 노래>
- 주 최 : 거창군(거창사건사업소)
- 행사내용 : 국화꽃 관람 및 부대행사 운영
  - 화단국(소국) : 10여종 20만본 (국화군락지 3500㎡)
  - 모형작 : 20여점(헬리콥터, 사과, 바이킹, 구름다리, 터널 등)
  - 분재작 : 100여점(고간작, 방산형, 직간작, 곡간작 위주)
  - 산책로 : 국화꽃길 2km, 이중꽃벽 260m, 꽃미로(350㎡)
  - 대형화분국 : 돌, 나무, 원형 대형화분 4,000점
  - 경남도 육성 분화국 : 22종 1,000점
  - 이벤트하우스 및 바람개비화단 : 신품종 절화국 72종 10,000본
  - 예술체험 : 음악콘서트(10팀), 마술(Magic)체험(4팀), 풍선빼어로(1팀)
  - 도전체험 : 평생학습체험(12팀)
  - 기타체험 : 포토존 설치, 국화 관람 소감문달기, 농특산물판매, 거창관광지 및 전통시장 홍보, 먹거리장터 운영

## 7.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 안내

(담당 : 김태현 940-7714)

우리 군에 거주하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재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중이오니 올해 부부가 된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만19세 ~ 만45세 신혼부부(1977. 1. 1. ~ 2003. 12. 31.)
- 지원기준
  - 2022. 1. 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거창군에 거주할 것
  -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거창군에 거주할 것
- 지원내용 : 1가구당 **6백만원**(3회 분할 지급)
-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 문 의 : 거창군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

## 1. 12월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사업 신청 안내 [담당 : 김태림 940-7723]

- 신청기간 : 2022. 11. 10.(목)까지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저소득 홀로어르신(수급자·차상위 등)
- 지원내용 : 빨래차량이 지역 방문하여 이불 등 대형빨래 세탁서비스 제공
- 협조사항 : 서비스 대상자 발굴, 차량설치 장소와 급수 제공 등 협조
  - 1) 이동빨래차량에서 나오는 세탁 후 오폐수처리가 가능한 지역(경로당, 마을회관 등) 추천
  - 2) 차량방문일 안내 및 해당 일자 차량설치 장소·급수 제공 사전 협의
  -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이용자 비대면 운영방식에 따른 절차 준수 협조
    - 마을 대표자가 이불 수거 후 이룸표 부착 및 수량 파악 후 경로당에 적재
    - 이용자 1인당 1채로 제한(코로나19 방역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확대 조정 가능)
- 기타문의 : 함양지역자활센터 / 010-4926-8949 / 이유형

## 2.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신청 [담당 : 김태림 940-7723]

- 사업대상 : 독거노인(재가서비스, 장기요양 등), 장애인, 만성질환자, 조손가정 등
  - ※ 제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 사업내용
  - AI인공지능스피커 : 긴급구조서비스, 정서지원용 말벗기능, 건강정보, 음원서비스 등
  - IOT생활감지센서기 : 활동, 호흡, 심박수 모니터링 통해 위급상황을 효과적으로 검출
- 사업수행기관 : 거창인애노인통합지원센터

##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변경 안내 [담당 : 김태림 940-7723]

- 신청기간 : 연중상시(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변경사항 : 지원대상 축소
  - 기존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변경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2022. 7. 11. 격리자부터 적용)

##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 지원제외 대상 : 유급휴가 제공받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위반자, 공공기관 종사자
- 지원기준 : 정액지원(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현장비치), 격리통지서(문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남하면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정부24)

### 4. 「행복이 남하도는 냉장고」 공유냉장고 운영 [담당 : 서현옥 940-7722]

- 공유냉장고란?
  - 이웃과의 음식나눔을 통해 음식물이 필요한 이웃과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지역에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랑 나눔 공유프로젝트
- 장 소 : 면사무소 1층
- 이용대상 : 전 주민
- 사업내용
  - 물품기부 및 나눔 : 누구나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하고 지역주민 모두 무료로 이용가능
  - 공유가능 물품 : 과일, 채소 및 식재료, 반찬류, 가공품, 냉동식품, 빵, 간식류 등
  - 공유불가 물품 : 주류, 약품류, 불량식품, 쉽게 변질되는 식품 등

### 5.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협조 [담당 : 서현옥 940-7722]

- 발굴기간 : 연중
- 발굴주체 : 복지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
  - 코로나19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실직, 휴업, 폐업 등 생계곤란가구
  - 빚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가구
  - 겨울철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 취약 가구

## 1. 생활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단속 및 홍보 협조 요청

(담당 : 정종필 940-7732)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 홍보내용【붙임 1】

- 단속대상 : 마을주면, 논밭 등에서의 소각행위, 화목보일러 사용 시 비닐 및 플라스틱 등 소각금지품목 소각행위
- 적발 시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 폐자원 보상교환 변경안내 홍보 협조 요청 (담당 : 정종필 940-7732)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시행 중인 폐자원 보상 교환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교환시간 : 월요일~금요일 (10:00~ 15: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교환장소 : 재활용 선별체험시설(거창군 매립장 내), 거창읍 심소정길 139-14
- 기타사항 : 사전 연락 후 방문 필요 (☎ 940-3505, 940-3506)
- 교환기준 및 내용

재활용품		교환물품
폐건전지	15개	 건전지 1세트(2개)
우유팩	200ml	75개
	500ml	30개
	1,000ml	15개
투명페트병(무색/ 생수,음료)	15개	 롤 화장지1개(가정용)

## 3.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홍보

(담당 : 정종필 940-7732)

- 신고전화 : 거창군청 건설과(☎ 940-3555), 경상남도 콜센터(☎055-120)
-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포상금
  - 지방도상 동물사체 최초발견 신고 시 : 10,000원
  - 지방도상 동물사체 발견처리 신고 시 : 20,000원



#### 4. “우리 동네 눈치우기” 학생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및 협조 요청

(담당 : 정종필 940-7732)

예상치 못한 폭설과 한파 등의 자연재난에 사전대비 하고 우리 동네에 눈이 내렸을 경우, 학생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재해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활동기간 : 눈이 오는 경우에 제한하며, 해당 날짜에 봉사신청 및 활동이 가능
- 활동내용
  - 눈 치우기 활동을 하기 전, 1365포털(봉사활동 포털)에서 해당 날짜에 봉사신청 필수
  - 봉사활동 장소의 현장 사진을 전, 중, 후 각 각 1장씩 스마트폰 사진 촬영 할 것
  - 활동 후 거주지역의 이장님께 연락하여 현장 확인 요청(이장님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작성한 후 거창군 자원봉사센터로 제출할 것
- 신청방법 : 최대 00시간까지 인정, 방문 또는 팩스 신청(055-940-3909)
- 이장님 협조사항 : 눈치우기 활동 후 현장 확인 협조

#### 5. 영농폐기물(환경공단 수거불가 품목 등) 수거안내 (담당 : 정종필 940-7732)

구 분	배 출 방 법
빈 농약병 및 페비닐	각 마을 배출장소를 통한 1차 수거 후 방문 수거 의뢰 수거위탁 : 표상년(010-4580-6593), 사전예약 필요
비료포대	봉투에 담거나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하여 배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클린하우스 배출)
반사필름, 농약표기 없는 유사용기 (영양제, 착색제 등)	흩날리지 않게 묶어 '거창군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 처리
곤포사일리지	생산자 수거품목(EPR), 처리업체를 통해 배출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 02-6952-3257)

#### 6. 빈집정비 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절차 홍보

(담당 : 정종필 940-7732)

건축물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건축물 해체 절차가 강화되었으므로, 반드시 건축물 해체 시 사전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 해체공사 허가 : 전문가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전 적정성 검토
  - 해체공사 감리 : 감리자 전문성 강화 및 수행업무 등록 의무화
  - 해체공사 시공 : 작업자 업무 신설 및 허가권자 현장 관리 권한 강화
  - 처벌조항 신설 : 처벌강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내문 : 【붙임 2】 참조

## 7.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담당 : 정종필 940-7732]

생활폐기물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일반, 음식물 등)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 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이장님의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불법 배출 예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내 일반쓰레기 배출

○ 안내문 : **【붙임 3】** 참조

## 8. 도로조명시설(가로등) 신설 및 이설 요청 시 유의 사항 안내

[담당 : 정종필 940-7732]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로조명 시설 설치신고 접수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설치기준

- 도로의 종류·기능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 설치 간격은 50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에 따라 가감
- 무분별한 신청으로 설치 후 포기서 제출이 많아짐에 따라 도로조명시설 신청 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

○ 설치 우선순위

- 위험한 절개지 및 계단이 있는 가파른 골목 50미터 이상과 도로(길) 아래 급경사 및 하천이 있는 지역
- 도로조명시설(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할 경우 세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는 지역이거나 지역주민들의 야간 통행이 많은 지역
-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학교주변 또는 주택가의 골목길에 설치를 요청한 경우
- 귀농·귀촌가구 및 공장(사업체)이 다수인 지역과 인구 및 공장(사업체) 종사자가 다수인 지역 등

○ 설치제한(조례 제9조)

- 도로조명시설(가로등)이 설치된 노선
-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등

## 9. 2022년 거창군민 안전 보험 안내

[담당: 정종필 940-7732]

- 기 간 : 2022. 1. 22. ~ 2023. 1. 21. / 1년마다 갱신
- 피보험자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청구방법
  - 청구시기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참고
  - 서 식 : 홈페이지 청구서식 다운로드
  - 방 법 : [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및서식] → [사업별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 문 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 거창군 안전총괄과(055-940-3633)
- 보장내역

구분	보장항목	보장금액	비고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만15세 이상
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만15세 이상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
5	익사사고 사망	3,000만원	만15세 이상
6	의료사고 법률지원	최대 1,000만원	-
7	청소년유괴,납치 인질일당	100만원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만12세 이하
9	미아찾기 지원금	최대 100만원	만8세 이하
10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최대 2,000만원	-
11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3,000만원	만15세 이상
12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
13	가스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만15세 이상
14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
15	감염병 사망	1,000만원	만15세 이상
1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만15세 이상
17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
18	유독성물질사망	2,000만원	만15세 이상
19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최대 2,000만원	만65세 이상
20	헌혈후유증보상금	최대 100만원	-
21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

※ 감염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한함

##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맙시다

영농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로 미세먼지, 악취, 매연 등 주위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소각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외 장소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 노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 소각을 위한 용기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등에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은 목재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등

### 불법소각의 문제점

불법소각 시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건강상 피해 유발

### 올바른 폐기물 처리방법

- ❖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일에 배출합니다.
- ❖ 재활용품은 분리수거 하여 지정일에 배출합니다.
- ❖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가정은 반드시 이물질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않은 목재를 사용합니다.
- ❖ 영농폐기물은 공동집하장으로 수집하면 일괄 수거합니다.

### 불법소각 시 행정처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각 : 10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붙임2 : 빈집정비 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절차 안내】

2022년 8월부터

##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해체계획서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작성기준 신설 및 건축 심의 도입
- 해체감리 업무 강화로 철저한 현장 관리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달라진 건축물 해체제도(2022년 8월 4일 시행)

해체공사 신고·허가 절차 강화



해체공사 변경신고·허가 절차 신설

해체공사 중 변경신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변경 신고 변경 허가

※ 변경신고·허가 절차는 22년 8월 4일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변경신고·허가 절차는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절차를 준용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확대

신고	허가
<p><b>일부해체</b>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p> <p><b>전면해체</b> 면적 500㎡ 미만/건축물 높이 12m 미만/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미만의 건축물</p> <p><b>그 밖의 해체</b>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층속·개축·재축(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 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 대수전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p>	신고대상 외 건축물

※ 신고대상이라도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절차 강화

구분	작성	검토	기술자
신고 대상	관리자	기술자	건축사사무소 기술 신고를 한 자
허가 대상	기술자	-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된 자(건축구조, 건축사공, 건설안전기사)

지역건축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적용 대상

-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 신고 대상 중 허가권자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기관 해체공사 현장 점검 의무화

-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 감리자가 건축물 상태와 관리시스템에 대해 현장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 변경허가를 수리하는 등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필수확인영역의 해체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법 제183조 등에 따른 법률관리 점검기간에 포함가능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대상은?

- 건축물 사형,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10층 이상의 심미성을 고려해야 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변경신고·변경허가 절차에서도 동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기준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기준 개정

**해체공사 개요**

공사개요 관리표지  
예정공정표 등

**사전준비 단계**

건축물주권인사  
해체대상건축물 조사  
유물조사·영향평가조사

**건축심비의  
이름·일기·보호 등**

지하매설물 조치 계획  
심미성을 계속  
기시설을 설치 계획

**환경관리 계획**

소음 진동 관리  
해체를 처리 계획  
부차량의 등

**안전관리 대책**

해체작업시 안전관리  
수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등

**해체공법 및  
보강계획**

해체공법 선정  
구조안전·보강계획 등  
(안전점검표 작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자격 요건 강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고제**

지정 대상

- 허가대상 건축물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건축물
- 신고대상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고제 대상

- 지침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 한 경우
-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작,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건축물 상태와 관리시스템에 대해 현장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 시행령 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자격**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따른 자격이 있는 자(공공기관 공무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제정회사는 제외한다.)
-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3년 이내에 이수한 자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절차 강화

**공사시행 단계의 감리업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축물 상태이력 정보제에 매일 등록

감리 업무

1. 공회, 관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 안전점검표 현황
3. 현장 특기사항(발생사유, 조치사항 등)
4.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감리업무 중 필수확인영역이 미연계 되면 감리자(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변경을 직접 확인하고, 촬영일지(요시영 사진 및 동영상)를 모으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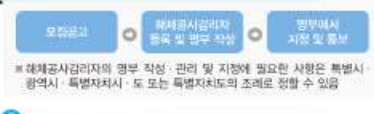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첨부기준 신설

건축물에 장애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안전점검표 필수확인항 작성예시 추가

- ※ **해체작업순서에 따른 공사 주요사항(필수확인항) 기재**
- 가시성 확보의 적정성, 안전도 및 보도구간의 안전대책 등
  - 저서모드 설치 상태, 전세를 받을 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 해체장비의 제한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진도방지 대책 등
  - 수변 안전건축물 계속관리, 흙막이 가시성을 적정성 확인 등
- ※ **필수확인항이란?**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사항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절차



해체공사 감리업무 절차

- 주요업무: 해체공사 기간 중 현장에서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여지 여부 확인
- 공사시행 전 단계: 감리업무 착수준비(해체계획서 검토, 허가 여건 조사)
- 공사시행 단계: 공정·시공관리(안전·환경관리(사전확인·보완))
- 공사완료 단계: 감리업무 기종관리(결과 보고 등)

공사 중 문제 발생 시 시정·중지 요청은?



문의전화: 1588-8788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Tel. 1588-8788

【붙임3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문】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1.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p><b>치킨상자 속 기름종이</b>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p> 	<p><b>미세척 컵받, 컵라면 용기류 등</b>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 미세화된 컵라면 용기는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아 재활용이 어려움</p> 	<p><b>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케찹 등 기름통</b>                  제대로 씻고 말릴 경우 재활용 가능</p> 
---	---	---

2.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

<p><b>과일망, 과일포장재</b>                  재활용이 어려움</p> 	<p><b>깨진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b>                  깨진병, 판유리는 재활용이 어려움                  &gt;신문지에 싸서 버림</p> 	<p><b>도자기류, 사기그릇</b>                  재활용이 어려움 &gt;불연성쓰레기로 배출</p> 
<p><b>아이스팩</b>                  고흡성수지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로 배출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 분리 배출]</p> 	<p><b>보온보냉팩</b>                  재활용이 어려움</p> 	<p><b>문구류(볼펜, 샤프, 칫솔 등)</b>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p> 
<p><b>CD/DVD, 고무장갑, 슬리퍼</b>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p> 	<p><b>노끈</b>                  노끈마다 재질이 다양해 구분이 어려우므로 재활용이 어려움</p> 	<p><b>기저귀, 화장지</b>                  재활용이 어려움</p> 

자세한 내용은 **내손안의 분리배출앱** 을 참고해주세요

2020 자원순환 실천플랫폼  
**우리도 함께 합니다**



지구를 위한 선택  
 사실은 우리를 위한 실천  
[www.recycling-info.or.kr/act4r/](http://www.recycling-info.or.kr/act4r/)





우리 가족이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 합시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용기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배출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행궤서 배출	라벨 등의 다른 재질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종류별, 색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p><b>종이상자</b> 상자에 붙은 테이프, 철판, 택배영수증을 제거한 후 펼쳐서 배출</p>	<p><b>신문지</b> 물에 젖지 않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p>	<p><b>종이팩</b> 물로 헹군 후 평평하게 펴서 일반 종이류와 분리해서 배출</p>
<p><b>플라스틱용기(페트병)</b> 비닐로 된 상표를 제거한 후 발로 밟아 압축해 배출</p>	<p><b>비닐류(필름류)</b>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두 차례 씻은 뒤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b>▶ 잠깐!!</b>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중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p>	<p><b>스티로폼</b>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깨끗이 씻어서 배출 <b>▶ 잠깐!!</b> 이물질로 오염되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경우 중량제봉투에 담아 배출</p>
<p><b>플라스틱(기타)</b> 상표, 이물질 등은 제거한 후 배출 <b>▶ 잠깐!!</b> 알약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중량제봉투에 배출</p>	<p><b>유리병</b> 담배꽂초 등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철로 된 뚜껑은 분리해 고철로 배출 <b>▶ 잠깐!!</b> 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거울, 전구는 중량제 봉투로 배출</p>	<p><b>폐형광등·폐건전지</b> 읍·면 주민센터 또는 공동주택 전용수거함에 배출 <b>▶ 잠깐!!</b> 백열등, 전구,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에 싸서 중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p>



거창군

# 경제산업담당

## 1. 2022년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일정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내 용

구분	매입일자	해당마을	매입장소	비고
건조벼(포대)	11.11.(금)	신촌, 안흥, 아주, 대곡, 오가, 용동	심소정 생태공원 주차장	
친환경벼(톤백)	11.29.(화)	자하, 신기	지산노인회관 앞	
친환경벼(톤백)	11.30.(수)	장전, 천동, 대사	대사마을창고 앞	
건조벼(톤백)	12.01.(목)	대촌, 무릉, 월곡, 산포, 용동	RPC (거창읍 정장리 200)	

※ 향후 기상 상황 등으로 일정 변동 가능

## 2. 2022년 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발생 조사(4차)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조사기간 : 2022. 10. 24.(월) ~ 11. 4.(금)

○ 대 상 : 관내 사과·배 과수원 및 묘목장

구분	집중 조사기간	대상 병해충	예찰면적(ha)			비고
			계	사과	배	
계			1,735.2	1,726	9.2	
1차	5. 2. ~ 5. 13.	과수화상병	409.2	400	9.2	완료
2차	6. 7. ~ 6. 17.	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463	463	-	완료
3차	7. 4. ~ 7. 15.	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463	463	-	완료
<b>4차</b>	<b>10. 24. ~ 11. 4.</b>	<b>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b>	<b>400</b>	<b>400</b>	<b>-</b>	

○ 내 용 :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발생 면적 및 정도 조사

○ 조치사항 : 의심주 발생 시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 신고(☎ 940-8240)



### 3.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신청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신청기한 : 2022. 11. 4.(금)까지
- 대상작목
  - 과수(10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매실, 참다래, 블루베리, 자두, 복분자
  - 채소(6종) :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수박
  - 식량(8종) : 벼, 보리,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수수, 팥
  - 특용(8종) : 녹차, 인삼, 유채, 참깨, 들깨, 땅콩, 오디, 오미자
  - 기타(3장) : 유자, 대파, 밀
- 내 용 : 농장 단위의 상세한 기상예측 정보와 농장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생육단계를 고려한 기상위험판정정보 및 대응지침을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개별 농가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무료서비스
- 홍 보 문 : 【붙임1】 카드뉴스 참고

### 4.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임시휴관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휴관기간 : 2022. 11. 7.(월) ~ 12. 2.(금) / 4주간
- 시설위치 : 거창읍 거함대로 3322(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 사 유 : 미생물 살균배양시스템 설치 공사로 인한 기기운영 일시중단
- 문 의 처 :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담당(☎ 940-8203)

### 5. 2023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신청기한 : 2022. 11. 4.(금)까지
- 신청대상 :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 농업경제 미등록 농가 신청 제외
  -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 미가입자, 의무자조금 미납부자 신청 제외
- 지원비율 : 보조금 50%, 융자 30%, 자부담 20%
- 내 용 :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인삼밭 쟁기 등 고품질 시설·장비 설치 및 구입 자금 지원

## 6. 2023년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신청기한 : 2022. 11. 11.(금)까지
- 신청대상 :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 지원품목 : 농산자조금 지원 품목(채소류, 과수류, 화훼 등)
- 사업규모 : 개소당 총 10억원(보조 90%, 자부담 10%)
- 내 용 :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 문 의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부(☎ 061-931-1035, 1038)

## 7. 2022년 추기 및 2023년 춘기 산불방지 예방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산불방지 대책기간 : 2022. 11. 1. ~ 2023. 5. 31.
- 주의사항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금지
  -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 산행 자제
  - 입산자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 처벌규정
  -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산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 (1차) 30만원 / (2차) 40만원 / (3차) 50만원
  - 산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 8. 가을철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시 문제**

- 영농폐기물·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산불 발생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서는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 폐기물 관리법 상 벌칙 사항(제68조제3항) :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 (재활용 가능품목)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으로 배출

● (재활용 불가능품목)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로 배출

■ 벼·보릿대,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하거나, 로터리처리

■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에 있어, 해충류는 11%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방제되나,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류, 토양유기물 분해자 등 익충류가 89%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야기



**9. 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 : 이필우 940-7741]**

- 신청기간 : 2022. 11. 25.(금)까지
- 신청방법 : 【붙임2】 면세유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 농업법인
- 사업내용 : 2022년 3월부터 4/4분기까지 농가에서 사용한 면세유류의 50%에 대해 유종(휘발유 · 경유 · 등유)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 지원
- 유의사항 : 2022.11.30.(수)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이 되므로 4/4분기 배정량을 미리 사용(구입)

**10. 11월 농업기계 현장순회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 일정 알림**

[담당 : 최지에 940-7743]

- 교육일시 : 2022. 11. 10.(목) 10:00
- 교육장소 : 자하마을회관 앞
- 교육내용 : 농업기계 자가 점검·정비 기술 교육, 안전교육
- ※ 우천 시 교육일정 변경될 수 있음

## 11. 2022년 마당개 증성화 수술 지원사업 신청 [담당 : 최지에 940-7743]

- 기 간 : 2022. 10. 17.(월) ~ 11. 10.(목)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기준 : 마리당 (암)400천원, (수)200천원 (보조90%, 자부담10%)
- 지원대상 : 군 관내,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
  - ※ 내장형 동물등록 필수 / 가구당 5마리 이내로 지원
  - \* 마당개 : 주인이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마당에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
  - \*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절차 병행 (비용은 소유자 부담)
  - \*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마당개가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 \* 반려견의 무게에 따른 수컷, 암컷 수술비 자부담 추가분이 있음
- 필요서류 : 동물사진 2장  
(마당개 사진 1부, 마당개와 집주소가 함께 보이게 찍은 사진 1부)

## 12. 2023년도 조림 신청·접수 안내

[담당 : 최지에 940-7743]

- 신청기한 : 2022. 11. 3.(목)까지
- 신청인 : 산주 직접 신청
  - ※ 종중이나 연명으로 되어 있어 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종중대표 (종중회의록 등) 또는 공동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 유의사항
  - 조림수종) 낙엽송, 고로쇠, 백합, 상수리, 자작, 헛개 등[2022년 기준]
    - ※ 편백은 고사율이 높아 신청 지양하며 호두나무 및 기타 유실수 등은 우선순위 배제
  - 조림사업은 자부담 10% 있음
  - 신청 수종은 100% 선정이 안 될 수 있으며 경상남도 보유 수종을 우선선정
  - 예산 및 신청량에 따라 다음 연도로 미뤄질 수 있음
    - ※ 의무조림지 및 편백고사지 우선 조림 실시

### 13.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금 신청 안내

[담당 : 최지에 940-7743]

- 대 상 : 군내 주소(주민등록상)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① 쫄쫄가무시증 ② 랩토스피라증 ③ 신증후군출혈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비농업인도 농업생산활동 중 발생한 피해일 경우 지원 가능)에 한함.
- 지원금액 :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비급여 제외)(최대 50만원 한도 지원)

※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 기준으로 지급

- 구비서류
  - 가을철 발열성질환 보상금 지원신청서
  - 농업 생산활동 확인서(비농업인만 제출)
  - 병원체 유무 확인 검사 결과 통지서(보건소 확인공문)
  - 병명이 나오는 진단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내역서 중 택일)
  - 진료비 영수증
  - 신청인 통장사본

### 14. 2022년 하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 알림

[담당 : 최지에 940-7743]

- 단속기간 : 2022. 11. 7.(월) ~ 11. 25.(금) / 19일간
- 단속대상

유 형	내 용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li> <li>※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li> <li>◦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li> </ul>
제한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li> <li>※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li> </ul>
결제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li> </ul>
현금과 차별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li> <li>◦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 후속조치 : 가맹점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 15. 「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알림

[담당 : 최지에 940-7743]

- 시행일 : 2022. 8. 18.(목)
- 신고의무인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고서류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신고방법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유의사항 : 2022년 8월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 제재사항 :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16. A 특별방역대책기간(2022)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알림

[담당 : 최지에 940-7743]

- 시행기간 : 2022. 10. 1. ~ 2023. 2. 28.(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4.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5.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6.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7.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 17.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명령 공고 알림

[담당 : 최지에 940-7743]

-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 기 간 : 2022. 11. 1.(화) 00:00부터 2023. 2. 28.(화) 24:00까지
- 지 역 : 거창군
- 대 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내 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
- 별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 의 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 ☎ 055-940-8145)

## 18. 제8기 경남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모집계획 안내

[담당 : 최지에 940-7743]

- 접수기간 : 2022. 10. 24.(월) ~ 11. 9.(수)
- 모집분야 및 신청자격 : 10개 품목 200명(세부품목 및 자격 붙임 계획 참고)
-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참고
- 등 록 금 : 연간 100만원 내외
- 교육기간 : 2023. 2. ~ 2025. 2.(2년 4학기) / 480시간 정도
- 접수장소 : 경남농업마이스터대학 본부(경남 진주시 대신로 570, 경남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 내)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19.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홍보 협조

[담당 : 최지에 940-7743]

- 신청기간 : 연중(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
-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1957. 12. 31. 이전 출생
  -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원동기면허 제외) 완료
  - 경상남도 거창군 주민등록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
- 지원내용 : 거창사랑상품권 지급(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 지원절차 : 【붙임3】 안내문 참조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 내 농장 맞춤 ‘기상알림이’ 농업 기상·재해 예측 조기경보서비스

- 농장단위 작물별 맞춤형 기상재해 예측 조기경보서비스 -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업 피해 속출!**  
(2020년 피해액 15,978억 원)

기상·재해 위험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와 농작물 안정생산을 실현해줄

농장단위 작물 맞춤형

**기상·재해 예측**

**조기경보서비스 개발!**

어떤 서비스인지

자세히 알아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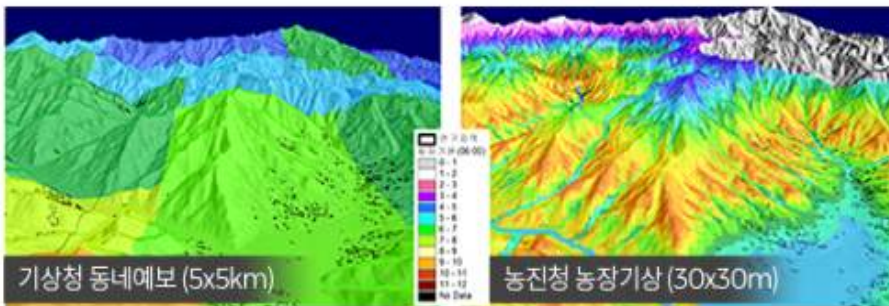


# 세계 최초 농장단위 기상·재해 사전 알림 서비스 구현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재해정보/대응조치 등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 핵심기술 3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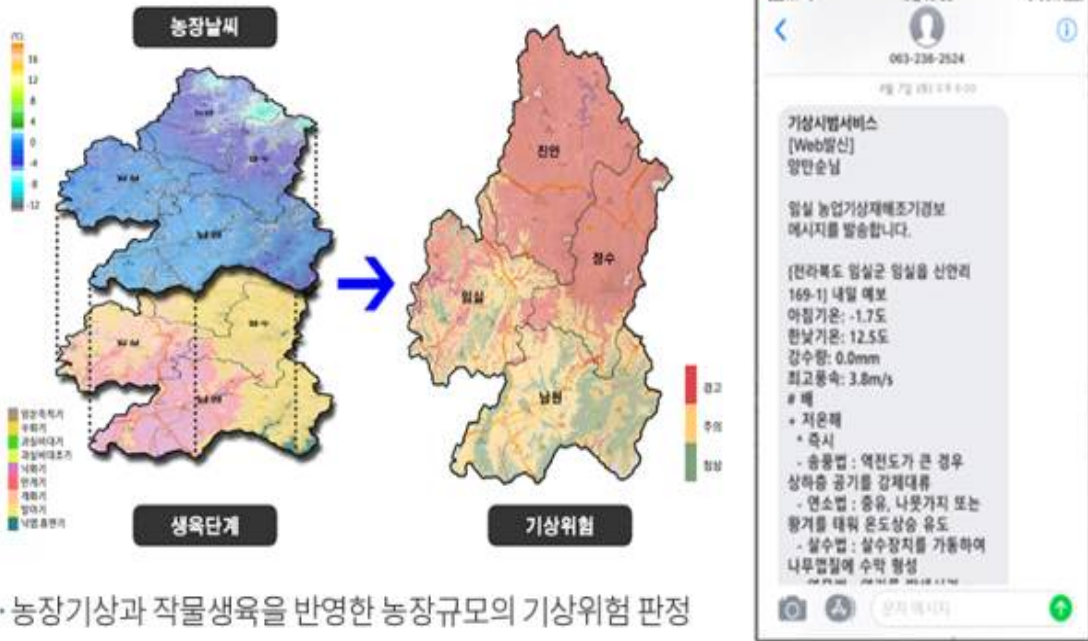
소기후 모형 활용 농장단위의 상세 기상정보 예측



\* 30m 격자 단위로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

## 첫 번째 '소기후 예측' 기술

모든 농장에 동일하게 제공되는 각종 기상정보를 농촌의 국지  
공간특성(지형, 고도 등)을 반영해 농장단위로 다르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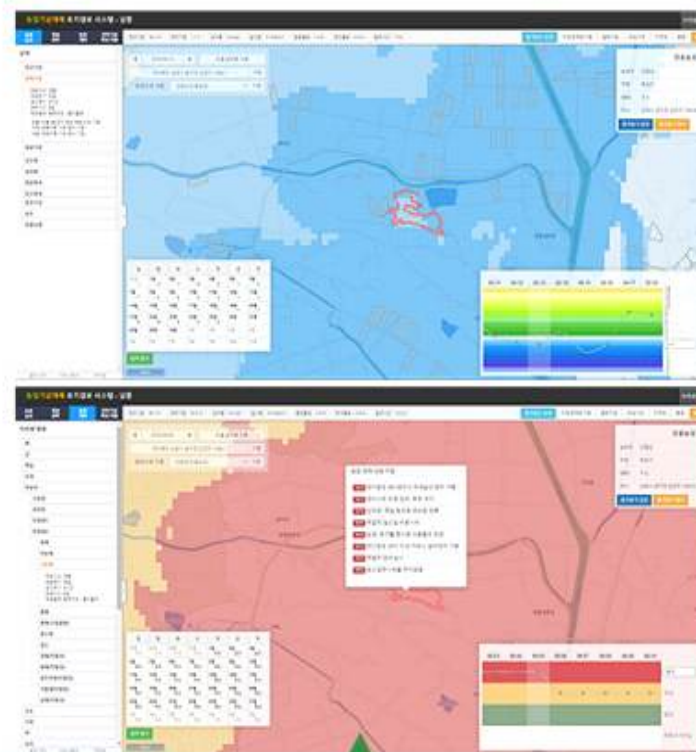
## 두 번째, '기상위험 판정' 기술

재해위험 정도를 농장단위의 기상정보와 작물의 생육상황을 고려하여 농장별로 다르게 판정

## 세 번째, '조기경보서비스' 기술

농장단위의 기상과 재해예측 정보를 대응지침과 함께 개별 농가에게 인터넷(<https://agmet.kr>)과 모바일을 통해 사전 전달

# 조기경보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 ① 농장기상 : 기상요소 11종을 농장단위(30~270m 격자)로 상세히 제공
- ② 농장재해 : 기상재해 15종을 작물생육 상황에 맞게 제공
- ③ 대응조치 : 작물 36종에 대한 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책(사전, 즉시, 사후) 제공

- ▶ 총 41개 시·군에 서비스중이며 14,300여 농가에서 이용 중 ('22년 6월 현재)
- ▶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서비스 확대 계획

## 국내외에서 입증된 우수한 기술력



01 | 기후변화 적응 국가 대표사례로 선정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포털에 등록(15년)



02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범부처 행정한류  
우수사례 50선(15년) 및 26선(16년)에 선정  
▶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에 소개집으로 배포



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 10선에 선정(16년)



04 | 한국기후변화학회 기술상 수상(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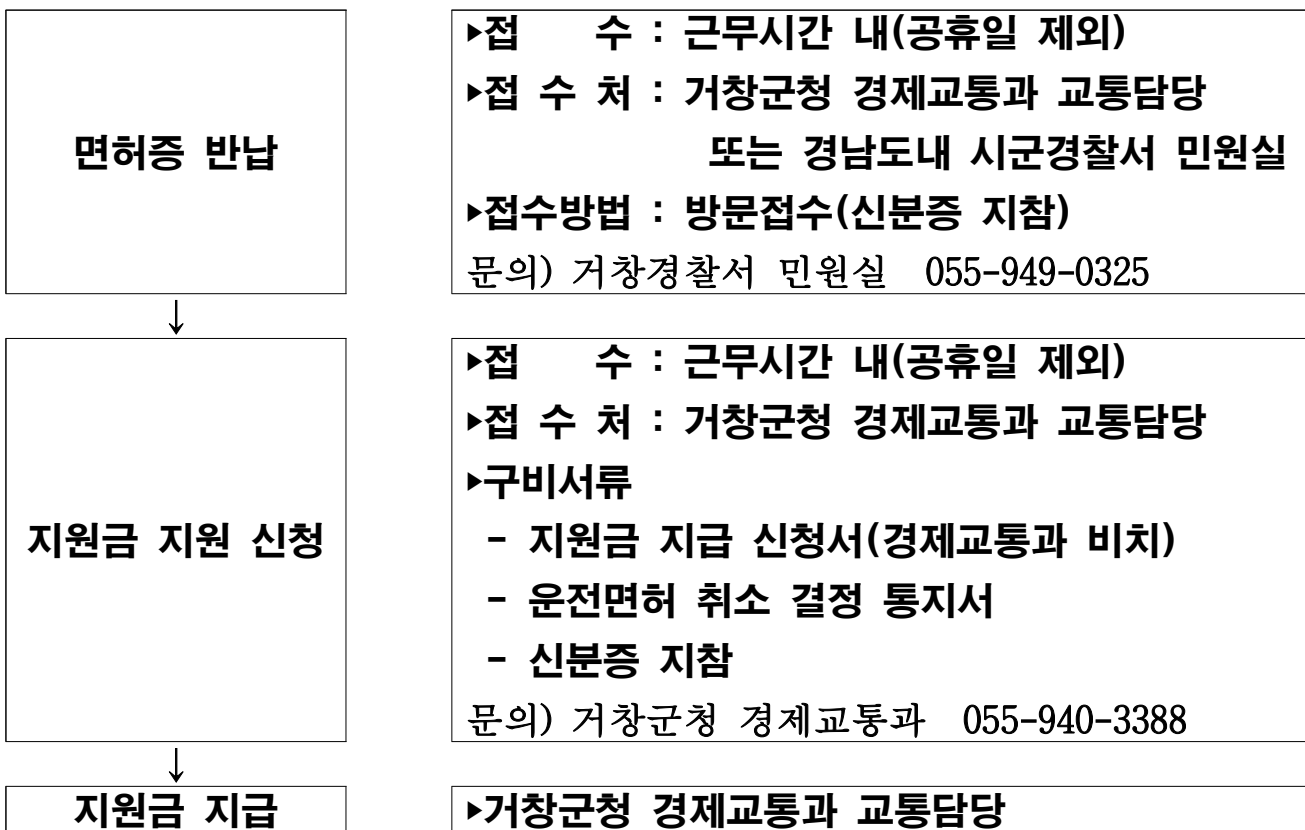


**【붙임 3】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안내**

**〈홍보 안내문〉**

- \* 지원자격 : 65세 이상(1957.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 중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원동기면허 제외)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처리 된 자
- \* 지원사항 : **거창사랑상품권 지급(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940-3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



**〈신청시 유의사항〉**

- \* 거창군청(경제교통과) 방문 접수 시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함.  
(단,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를 가져올 경우, 대리인 수령도 가능함)
- \* 운전면허 반납 처리 시 운전이 불가하며, 필요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함.
- \* 여러개의 면허증 반납하더라도 1개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
- \* 지원대상 대상 중 원동기 면허 반납자 제외
- \* 지원금은 거창사랑상품권 지급(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